

**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
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**

의안 번호	2000- 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00. 1. 18 .
제 출 자: 최용환의원의외 8명

개정이유

1999. 12.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각조의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등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서 운영하고자함.

주요골자

- 제명을 “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”로하고
- 제1조,제2조,제6조,제9조의 내용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하며,
- 제6조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
 - 의정활동비 본문중 “월 350,000원”을 “월 550,000원”으로
 - 회기수당 본문중 “1일 50,000원”을 “1일 70,000원”으로 한다.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1999. 12 .31 대통령령 제16,672호)

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
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회의수당"을 "회기수당"으로
제1조,제2조,제6조,제9조의 내용중 "회의수당"을 "회기수당"으로
제6조 본문중 "월 350,000원"을 "월 550,000원"으로, "1일에
50,000원"을 "1일에 70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 <u>회의수당</u>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.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<u>회의수당</u>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·<u>회의수당</u>지급)①의정활동비는 의회에 소속된 의원에게 지급하되 거창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②<u>회의수당</u>은 회기중 의회의 회의(“위원회의 회의”를 포함한다.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<u>회의수당</u>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내지 제5조(생략)</p> <p>제6조(의정활동·<u>회의수당</u>지급기준) 의정활동비는 월 350,000원으로 하고 <u>회의수당</u>은 출석일수 1일에 5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제7조내지 제8조(생략)</p> 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·<u>회의수당</u>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거창군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명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 <u>회기수당</u>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회기수당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-----<u>회기수당</u>-----)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회기수당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내지 제5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-----<u>회기수당</u>-----) -----</p> <p>----- 550,000-----</p> <p><u>회기수당</u>-----70,000</p> <p>-----</p> <p>제7조내지 제8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준용) -----</p> <p>-----<u>회기수당</u>-----</p> <p>-----</p>